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상정된 안건

- | | |
|---|----|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1 |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 1 |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 4 |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5 |
| 5.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 17 |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10시01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소위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26일 날 저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조문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을 토대로 116조의3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이름으로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데요. 흉기소지 자체로 처벌하는 게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흉기소지죄 입법 취지와는 달리 또 너무 구성요건을 좁힌다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실제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법원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이런 규정이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남용될 우려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관련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을 할 때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학설을 보면 갈려 있습니다. 흉기가 포함된다는 학설이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같다라고 하는 학설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판례는 구분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을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흉기가 위험한 물건보다 좀 더 좁은 범위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너무 한쪽 견해에 입각해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 출제되면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신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요.

다만 표현에 있어서 현재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바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범죄 자체의 구성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소지를 넘어서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제시한 의견이 적어도 소지를 넘어서서 이것이 밖으로 노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안녕을 해할 위험성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두 기관 모두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래요?

○**유상범 위원** 차장님, 지금 이 규정 형식을 보면 이게 구체적 위험범 형태로 규정이 돼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결과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 위험범.

○**유상범 위원** 위험범의 형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드러나는 순간 사실상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구성요건에서 반드시 불안감을 줬느냐 공포심을 느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그런 것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정 형식이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그것의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약간의 보충적 설명일 수도 있어서요, 드러내어라는 부분만이 반영이 된다면 뒷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으로 행위태양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차장님, 지난번에도 지금 유상범 간사님 질문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지하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노출되어져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전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법조문에 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굳이 넣어서 되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빼더라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반대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10시09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3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밀수출입죄하고 관세포탈죄 예비행위를 2분의 1로 감경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제8항에, 개정안 8항이 핵심인데요 감경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3쪽, 이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밀수입 예비행위까지 본죄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비 입법이고요.

다만 개정안 6조 8항을 보시면 밀수출입죄하고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죄를 실제로 범한 자를 처벌하는 건데 조문상 해석하다 보면 ‘예비죄를 예비한 사람’ 이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조문 법문을 ‘실제로 범한 사람’으로 수정을 했고요.

또한 가중처벌 대상이 관세법 269조(밀수출입죄)하고 270조(관세포탈죄)가 있는데 그 것에 대한 미수범과 예비죄로 한정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조문을 수정한 의견을 4쪽의 오른쪽 수정의견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관세법상으로 예비행위를 본범과 똑같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가 관세법은 수정이 됐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특가법은 반영이 되지 않아 보니까 특가법으로 가게 되면 예비행위를 본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안과 같이 약간 문구를 다듬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71조 3항에 규정된 범죄 중에 268조의2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여 가지고 현재에서 위헌 결정 난 유형하고 전혀 다른 유형이라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안과 같이 269조와 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고 해서 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요, 전문위원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지적한 대로 밀수입 예비죄가 없는 범죄까지 포함되는 그 문제까지 해결 다 됐으니까 이대로 의결하시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범계**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10시13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1페이지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 개요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수사요구안은 국회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됩니다.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사요구안을 전제로 한 상설특검법 유형과 개별특검법 유형이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요구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재의 요구를 통해서 부결됐던 법안에 있었던 수사 대상과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재의 요구했던 위헌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 조작과 같은 부분의 김건희 여사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과연이 부분을 특별검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 없이 그냥 풍문만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불공정 거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반대한다는 건데 이 법이 위헌은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 법을 위헌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을 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 놨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풍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면 통과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찬성한다기보다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게 1호에 있는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떤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될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점은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것은 특검의 기본적인 본질상 정부로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2항에 있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2항 빼면 나머지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된 부분들이고 국민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중에 안 돼야 할 부분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문에 불과한 것?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1호와 2호를 주로 말씀……

○박균택 위원 잠깐만요. 국민의 의심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잘못됐다 또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걸 빼면 문제는 없겠다고 하는 부분이 2항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1호, 2호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과 2호에 있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이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면 나머지는 괜찮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항고 제기가 된 상태라서 수사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검찰이 지금 한 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세현 고검장, 심우정 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지금 저 검찰, 그것도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고는 믿고 기다려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박균택 위원 양심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은.

○박균택 위원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너무도 많은 의혹들이 근거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 또 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정도면 국민들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일부 진보 매체만의 막연한 의혹 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코바나컨텐츠라든가 또 이 중에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해 가면서 나머지는 아니라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 법이 왜 있는데, 위헌성도 없는 법인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걸 부정

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의견을 한번,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차관님, 지금 김건희 특검법, 개별 특검법으로 아마 세 번 재의 요구가 됐었지요? 두 번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수사 대상과……

○**법무부차관 김석우** 총 네 번입니다.

○**유상범 위원** 네 번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여사 관련된 부분은 네 번.

○**유상범 위원** 재의 요구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상설특검법안에 나와 있는 수사 대상이라는 것도 그때 재의 요구됐던 수사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재의 요구됐으면 그것으로 법안의 처리가 어느 정도, 행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으면 거기서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스토킹하듯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또 개별특검법이 안 되니 이제는 상설특검법으로 내고. 게다가 위인설법처럼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은 또 일방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경우에는 추천도 못 하게 만드는, 이거 뭐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총 같아요, 모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대단하십니다. 홀륭하신 역할, 법안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법안, 국민들이 보면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짐요하다고 칭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입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개정을 해서 추천권까지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도 만들어 내고……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만일 여러분이 소수당이었으면 이 법안 동의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소수당이면 동의해요?

○**박균택 위원** 예, 양심이 있으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 양심이 있으니까.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 그게 양심 있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박균택 위원** 예, 물론 이 중에……

○**서영교 위원** 양심이 있으면……

○**유상범 위원**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양심이 있으면 거부하면 안 되지.

○**유상범 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소모적인 정쟁성 법안들의 계속적인 발의,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참 끊임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일단 계속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법안 발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처음에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 추천권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당초에 구성될 때는 당연직 3명인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것은 아예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규칙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지금 있는 안대로라면 민주당 2명 또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현재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준에 문제 됐던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정당에서 추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의혹들 대다수가 전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거나 고발을 직접 한 사건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에 따른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후퇴해서 기준 운영위 안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보충성·예외성 외에도 여야 합의로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수사권에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차관님, 그런 면에서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검찰이 뭐 하나 제대로 수사한 것 있습니까? 아니, 야당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더니 지금 검찰이 여기 나와 있는 의혹 중에 제대로 수사 한 번 한 거 있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석방해 주고 그러면서 위헌 소지 있다고 해 가지고 즉시항고도 안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김건희 불기소 실드치는 데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검이라고 보충성 자꾸 얘기하는데, 위헌성 얘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요 이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들이 부르짖으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검찰이 속 시원하게 수사해서…… 차관님이 선언하세요,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수사해서, 특수단 만들어서 속 시원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위헌성, 위헌성 합니까? 검찰은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위헌성, 위헌성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수사해 놓고 ‘우리한테 맡겨 주세요. 제가 풍문이든 뭐든……’, 풍문도 수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정권 내내 부르짖었던 내용을 수사 한 번도 안 해 놓고 와서는 위헌 부르짖고 있고.

위헌이라는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인권, 인권하면서 무슨…… 윤석열한테만 인권 있고, 다른 분들한테는 다시 날짜 계산하면서 윤석열만 시간 계산해 가지고 풀어 주고 말이지요. 국민들이 이 검찰 이제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차관님 말씀은 검찰한테 맡겨 달라는 것인데 검찰한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어야지요. 수백 번 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국민 대신, 거부권만 해도 이 정부 들어서 몇 번 했습니까? 사십 번 가까이 했잖아요. 거부만 해 대니까 당연한 거예요. 스토커입니까? 국민들이 될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들은 계속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위현성, 보충성, 특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말씀 하시려면 이 일곱 가지 제대로 수사해 놓고, 특수단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해 놓고 그런 주장 하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차관님, 그동안 이 정부가 거부권을 몇 개나 날렸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서영교 위원** 윤석열 거부권 몇 개나 날리고, 아까 말했던 김건희 특검 몇 개나 거부권 날렸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네 번 재의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여사 특검법 네 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네 번이나 날렸어요. 한 개라도 받아들인 게 있어요? 없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제가……

차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명태균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공천 주라고 했다는 육성 들었어요? 그 육성 나온 거 들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라고 했던 기자회견은 들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랬는데 그다음에 육성이 다시 나왔지요? 그 육성에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대요? 다시 나온 육성 들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육성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윤상현 공관위원장.

○**서영교 위원**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 육성이 나왔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한다며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라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그런가보다, 그럴 수도 있

겠다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다음 육성 정확히 들었지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거짓말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 부분은……

○서영교 위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부분을 판단을 못 해요, 차관이나 되셔 가지고?

하실 게 있고 안 하실 게 있지요. 윤석열의 차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차관이에요? 윤석열의 차관이에요, 김건희의 차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법무부차관이에요? 저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해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사이에 그게 다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버젓이 옹호를 해요?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되고 김건희 목소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제 당선자가 전화했어요. 당선자가 전화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잘될 겁니다.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누구? ‘윤한홍하고 장제원이 반대하는 모양이지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이거 육성 안 나오면 다 묻고 갈 생각이었어요? 검찰은 이거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찰이 이런 유에스비 확보했겠지요? 그렇지요, 유에스비에 들어 있으니까. 유에스비를 5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선일보 주고 하나는 여권 관계자 통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주고 나머지가 다른 데로 갔겠지요. 이게 다 숨겨서 묻혀 있었어요. 이러고도 수사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천 개입이 나왔으면 김건희·윤석열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윤석열은 그렇다고 치고 김건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숨기고 묻어 놨어요. 그러니 특검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헛소리해 가면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거를 거부를 네 번이나 했는데 또 합니다라고……

여당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심에 맞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해서 누구 공천 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되고요. 공천 개입 여부가 범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팀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그러면 법무부차관은 뭐 하러 있어요? 공천에 개입했어요. 공천에 개입해서 누구 주라고 했어요. 또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전화해서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을 줄 테니까 김상민 공천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법률 위반인가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을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서영교 위원 법률 위반인가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살펴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그만둬야 되겠네요.

이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는 가려 주는 게 법무부의 할 일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영선에게 전화를 해요. ‘그 자리에는 김상민을 공천을 줘야 돼요. 그러니 김상민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공기업 사장이든 장관 자리 줄게요’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무부차관에게 대통령이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전화해도 됩니다. 수사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해도 됩니다’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대통령이 ‘내 부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아니면 정치 개입 위반이야?’ 조언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긴지 아닌지 사전에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조언할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 공천 개입이 범죄가 되는 유형이 있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서영교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법무부차관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없어? 해야 되겠어. 할 수 있어, 없어?’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면, 지금 내가 구의원 공천하는데 구의원을 도와주면 내가 당신에게 도서관 관장 자리와 무슨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선관위에다 그것을 물어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선관위는 나에게 답변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지요.

돼요, 안 돼요? ‘구의원 공천을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서관 관장 자리와 무슨 자리를 줄게’라고 하면 내가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것을 옆에서 조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그렇게 해요, 김상민 도와주면 자리를 주겠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그게 수사를 해 봐야 되고…… 법무부차관, 양심에 손을 얹고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상설특검법 아까 박군택 위원님 말씀처럼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상설특검법?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것 자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논할 사

항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보냈어요. 최상 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즉시 임명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규정에는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모두가 다…… 우리가 사실 법을 통과시켰어요, 임명하라고 통과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해요.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그게 여기 법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서영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유상범 위원** 내가 말할 때는 꼭 끼어들어서 한 말씀 하시잖아.

○**서영교 위원** 아까 물었잖아, 우리한테. 물어서 답변한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누가 그것을 물어봤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라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위에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임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법원행정처 차장 입장에서 답변하지 못할 내용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만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임명해야 되는 거지요. 두려우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두려운 것은 없고요.

○**서영교 위원** 두려운 것은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말을 못 하는 것도 불편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제정돼서……

(일부 위원 퇴장)

좀 듣고 가요,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하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제정돼서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본회의에서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지금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절차적인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상설특검법을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소위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아니나 여러 가지 예우 등을 또는 경호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영부인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 조직을 이끌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만한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하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답을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봤을 때……

○소위원장 박범계 됐어요.

말 좀 축약해서 하는 것을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보충성과 예외성을 얘기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건이 제가 재직할 때도, 여기 이성윤 위원님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혐의가 뚜렷하면 왜 기소 못 했냐 이렇게 시비했지요.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의 첫 번째 결론, 지금은 고등검찰청에 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된 것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 못 한 것 또는 무혐의 못 한 것, 거꾸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못 했지요, 2년간? 맞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왜 못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뭔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그것을 항고했어요.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 3~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더 됐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게 10월 달에 사건을 처리……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왜 이것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위 나는 보충성의 원칙이 이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다음에 예외성이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보충성이나 예외성이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사안은 예외적인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인 혹은 대통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년째, 적어도 5년 이상…… 이게 금감원에 소위 적발이 된 것부터 시작하면…… 이성윤 위원님, 그게 2009년입니까?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성윤 위원 2010년입니다, 2010년.

○소위원장 박범계 2010년.

그러면 이게 지금 십몇 년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충성·예외성을 얘기하는 게 당치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는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충성·예외성의 원칙도 다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서울고검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발동할 사안이 된 거예요.

1호는 그렇고요.

2호의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이것은 위원장이 볼 때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차관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 문맥만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게 부정하게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이성윤 위원님, 비상장회사는 도이치파이낸셜을 말하는 거지요?

○이성윤 위원 예, 도이치파이낸셜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앞에 상장회사는 도이치모터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성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굳이 이렇게 상장회사·비상장회사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윗부분에 도이치모터스가 나오고 삼부토건……

삼부토건과 관련된 시세차익, 이번에 금감원장이 고발한 것은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1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서영교 위원 뚜렷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뚜렷하잖아요.

2호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이성윤 위원님, 이것 어떻습니까? 그냥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성윤 위원 지난 특검법에도 같은 논의가 됐었는데요. 도이치파이낸셜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행위 양태로 봤을 때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을 혼합해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대신에 앞에 대상자가 김건희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셨고요.

우리 심의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법안이 아니고 수사요구안이기 때문에 이 심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저하고 이성윤 위원님 문답 간에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요.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재 이 부분은 서울중앙에서 무혐의처분을 했고 또 공수처에 별도로 고발이 돼서 사건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갖추었다고 저를 보고요.

그다음에 디올백 관련해서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 역시 아직 결론을 못 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항고가 돼서……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결론을 못 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습니다. 아직 항고청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이 갖추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무실·관저 이전 국가계약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역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의 수사 상황 자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소위원장 박범계 모르지요, 잘? 이것은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많이 다루어 본 사안이거든요. 감사원이 감사도 했는데, 면죄부를 줬는데 면죄부의 앞뒤가 다 모순되고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뭐 여러 가지 등등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 김용현 장관인데 제대로 답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던 과정에 김건희 씨하고 코바나컨텐츠 등등 해서 연계가 된 인물이 소위 수의계약으로 하청을 받는 일이 관저 리모델링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관님, 이해하시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사건이 특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종호가 등장한다는 것은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토건 어찌고저찌고 체크해 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없는 게 아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풍문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당 위원님들 다 퇴장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호 부분은 법무부차관의 의견 제기도 조

금 참작할 점이 있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조금 특정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숨은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11호에 있는 관련 범죄로, 이것은 관련성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할 테니까 2호에 회사 이름을 좀 특정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성윤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등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그래도 무리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장님, 특별히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도 추천위원이시거든요, 차장님. 두 분 다 추천위원이시기도 한데, 차장님 한 말씀 더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저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통령께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아까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한번 드셔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10시49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1페이지 그리고 수사요구안 및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과 활동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요구안은 본회의 의결의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김건희 여사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사요구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의혹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의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병노 경무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건 맞는데 과연 어떠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3호에 보면 압수수색영장 수차례 기각했다는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경찰에서 총 40여 건의 계좌·통신 압수영장을 신청받았는데 대부분을 청구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5건만 기각을 했던 부분인데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뭔가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수사요구안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원칙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대상 되는 사건이 좀 모호하고 아직 구체적인 의혹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본건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차장님, 화물 편을 통해서 필로폰 74kg이 유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100kg이 들어올 상황이었는데 그걸 파악해서 차단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대규모 거대한 마약이 대한민국에 거의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규모를 전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건 중에서는 이런 대규모 마약 유통 사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정도 대규모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굉장히 대규모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서영교 위원 어마어마한 대규모인데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수사하던 경찰이 있어요. 사실 그 경찰은 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약 조직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100kg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줘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강서지구대, 지구대로 발령이 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조병노라고 하는—경무관이지요—이 경무관 승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병노 승진은, 그 유명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었던 공범이라고 하고 계좌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든 이종호가 조병노의 인사승진을, 조병노를 승진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육성 녹취를 통해서 나와요.

참 대단해요. 김건희하고 아주 가까운 이종호는 삼부토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별 4개 달아 준다고 그 육성도 나오고요. 인천세관 마약과 관련된 이 사건, 174kg이지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거의 반은 마약 중독이 돼도 되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연루되는데 이종호가 연루되어 있어요. 이종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종호가 조병노도 승진시켜야 되고 임성근도 봐줘야 되고 별 4개도 달아 줘야 되고 이런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세관에 이 마약이 들어왔는데 여기 말하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도 누르게 되고 이걸 열심히 한 백해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내 강서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그리고 수사를 처음에 하라고 했던 경찰서장은 나중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는 용산으로 가고. 다 승진했어요, 이번에.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대한민국이 아래도 됩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이에요, 마약. 그런데 이거를 보충성·예외성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반대해요, 차관은. 도대체 이종호랑 연관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종호랑 연관이 없고서는 이걸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김건희 것도 반대하니까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건지, 이거는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종호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수사를 들여다봤었는데요, 제가 기재위를 했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에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과할 때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 검색대를 지나와요.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 다 지나오게 돼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통관, 세관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옆으로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검색대 나올 때 다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천세관에서? ‘의원님, 검색대가 몇 개 없어 가지고요’…… 제가 기재위 할 때 검색대를 더 보강하라고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검색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생기긴 했는데 그건 그 마약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검색대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몸에 2kg씩 4kg인가 6kg, 한

명당 6kg씩 4명이 몸에다가 칭칭 감아요. 그런데 허벅지에다 칭칭 감아서 피가 줄줄 흘러요. 이거 당연히 왜 이러냐고 데리고 와야 되고…… 차관, 허벅지에다 칭칭 감으면 검색대 올 때 검색대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사람이 몸에다가 6kg를 칭칭 감았어요. 4명이 들어오거든요. 부부처럼 쌍으로 해서 들어오나 그래요. 칭칭 감아요. 그러면 검색대를 지나오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몸에, 검색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서영교 위원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색대로 나오지 않는다면까요. 왜?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 사람들은 검색대 통해서 당연히 잡힐 거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너 가면 바로 거기 공항에 있는 세관이 너를 데리고 옆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인도받아서 가면 너는 가게 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갔더니 당연히 그 사람 인상착의와 이걸 주면서 그 사람이 안내를 했고 그 사람 통해서 검색대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택시 타는 곳까지 이 사람이 안내해 줬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온 운반한 사람들의 진술이에요. 그러니 백해룡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영등포경찰서는 ‘어, 이거 봐라’……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부터 한 게 아니라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잡게 된 거예요. 잡아서 하다 보니까 운반책까지 나왔고 운반책이 나오니까 조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색대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관을 압수수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천세관만이 아니라 곳곳 세관이 다 해요. 그러면 세관장은 뭐 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 검색대 더 해야 되지. 빨리 잘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관장이 조병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사 세관하고 연결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조병노가 백해룡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세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내가 세관에다 물어봤더니, 검색대를 안 거쳤는데 어떻게 세관을 압수수색 안 하고 세관 보도자료를 안 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차관?

○법무부차관 김석우 세관 공무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마약 수사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마약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서영교 위원 어디서 진행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에서도 세관 측에서 제보를 받아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구속 기소도 했고요.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서영교 위원 구속 기소를 언제 한 거예요? 백해룡 사건 다음에 한 거예요, 전에 한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2023년도 2월경입니다.

○서영교 위원 백해룡 사건이 나기 전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검찰에서 기소도 하고 구속도 했는데 그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끝내고, 백해룡이 검찰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백해룡은 그냥 경찰에서 마약 사범 잡아 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이 과정 속에서 운반책까지 나오고 또 운반책을 수사했더니 이 과정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처럼 수사는 검찰은 끝냈어요. 백해룡 등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위에 용산에서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수사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관의 제보를 받아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관련된 공모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그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남부지검에서……

○서영교 위원 경찰 어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남부지검에서도 계좌 영장 등을 청구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언제 한 거냐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거는 작년……

○서영교 위원 23년 2월이라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이 부분……

○서영교 위원 백해룡 건은 언제예요? 23년 10월이 넘어간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에서……

○서영교 위원 서울남부지검에서 무슨……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멈췄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한 건데 다시 백해룡이 지구대로…… 잘 보세요, 변명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현재 확인을 해 봤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제가 계좌 영장……

○서영교 위원 영등포경찰서에서 하던 백해룡은 어떻게 됐어요? 그 수사팀은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수사 자체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던 사람들…… 이게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대로 수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kg 마약이에요. 174kg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마약 퇴치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이 의혹은 세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서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서영교 위원 이게 그 의구심만이에요, 마약 전반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검찰도 대부분……

○서영교 위원 어느 경찰이 하고 있으느냐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서영교 위원 영등포경찰서에서 누가 하냐고요, 그 사람들 다 해체시켜 가지고 보내놓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수사팀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있고, 검찰에서는 계좌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대부분 다 청구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를 언제 대부분 다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청구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나와서 얘기해 봐요. 지금 이야기하던 사람 얘기해 봐요. 뭘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여 건의 영장 청구 중

에 대부분을 청구하고 기각한 것은 일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언제 거냐고요. 언제 청구한 거냐고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어디서 누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영등포서 누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경찰관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수사하던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백해룡 경정은 어디 갔어요?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은 어디 갔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

○**서영교 위원**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백해룡 경정이?

차관, 그래서 백해룡 경정은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이걸 밝혀낸 사람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수사팀의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교체가 어떻게…… 아무나 교체하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교체가 됐을 것이고. 이것을 그 위에 있는 적당한 선에서 지휘하겠어요? 용산에서 지휘하는 거고 그러니 이것이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외성·보충성,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해 가면서 왜 특검을 막고 상설특검을 막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성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재 수사 상황 자체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공무원 7명을 입건한 상태이고 계속 서울남부지검에다 계좌 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입건을 언제 했는데, 이 수사가 안 되고 멈춘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최근까지 계속 이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뭘 최근에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관, 입건한 것은 벌써 한참 전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입건을 했고 수사를 했는데 백해룡 발령을 지구대로 내 버리고 그 사람들을 해체한 거라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이후로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실제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수사를 무마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각종 강제수사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

다.

○서영교 위원 뭔 강제수사가 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계좌나 통신 영장이나 압수영장……

○서영교 위원 아까 세관 7명 입건한 것은 언제 얘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그 무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대로 해 갖고 오시고.

이것을 방어를 왜 해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사가 다 무마되고 있었고 이런데 왜 방해하고 예외성·보충성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시를 받았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막으라고 지시받았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시 안 받았으면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내에서 논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가 이런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법무부는 존재하면 안 되는 법무부겠네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막으려고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진행이 뭐가 되고 있는지…… 왜 경찰들이 수사하다가 억울하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들이 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왜 수사가 멈추고 있는지 억울한 얘기 들어 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차관?

○법무부차관 김석우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23년도 10월부터 작년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진 것으로 그것까지는 확인했고……

○서영교 위원 그때가 백해룡이 하던 거예요, 2023년 10월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인사이동 이후에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서영교 위원 인사이동은 언제 났어요? 지금은 몇 년도예요? 지금 2023년 11월이에요? 2025년이에요. 백해룡 경정이 나와서 중언한 때가 언제예요? 작년 국감 때예요. 작년 11월이에요. 그때도 그 사람들은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0월에 수사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백해룡 경정 인사이동……

○서영교 위원 자,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왜 무마가 되고 있고 이게 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법무부에서 의견을 만들 때 들어 봤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안 들어 봤으면 법무부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하려 나오는데, 이거 상설특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법무부는 마약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하고? 이 얘기가 세상에 떠들썩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 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 봤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소위원장 박범계** 좀 쉬셨다가 이따 다시 질문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나와 있는 분은 누구예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형기과장 성함이?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파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과장님, 일단 지금 수사 외압 건이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검찰이 직접수사권이 있는 사건이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는 왜 검찰이 그렇게 마약…… 한동훈 전 장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특히. 그렇게 관심 있는 마약 관련된 사건이다, 이 규모가 3500억, 한 400만 명 가까이가 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전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남부지검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세관 의혹……

○**소위원장 박범계** 내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는 것을, 검찰이 영장 심사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범계** 내가 묻는 얘기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세관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공수처와 경찰이……

○**소위원장 박범계** 없다, 됐어요.

왜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이 부분은 공수처와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고 별도로 인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사건 말씀하신 내용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소위원장 박범계** 이게 검찰이 들여다볼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형기과장?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차관님 말씀……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지 않지요? 됐고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공수처에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참 희한하잖아요. 영등포경찰서에 맡겨 놨고 남부지검이 영장 지휘를 통해서 수사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차관이 전직 법무부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상설특검을 발동할 건지 말 건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상하잖아요.

아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내 기억으로…… 차관도 언론 기사만 보고 나왔어요. 왜? 언론 기사가 어디에서 끊어졌나? 23년 11월에 끊어졌습니다. 맞지요? 수사와 관련된 기사가 나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23년 11월에 끊어졌어요. 그 이후의 동정이 없어요, 수사와 관련된 동정이. 희한하잖아요. 지금 25년 3월이에요. 그사이에 변란이 있었어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걸 적발한 백해룡 경정은 파출소로 좌천 가 있고 그렇잖아요. 인천에서 시작돼 가지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인천세관, 세관이라는 게 차관 법무행정 하니까 잘 알겠지만 입국심사 한 다음에 세관 검사받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이 팩트 한번 확인합시다, 형기과장 나왔으니까. 아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안내를 받아서 별도의 통로로 입국을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그 당시에 경찰에서 구속된 말레이시아인 피의자가 그렇게 진술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맞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입국심사 그다음에 세관검사, 세관검사는 알다시피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세관신고서로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국심사는 법무부가 하는 거고 세관검사는 관세청이 하잖아요. 관세청은 특사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과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생생하게 ‘피 철철’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걸렸어요. 그렇지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백해룡 경정한테 걸렸잖아요. 그게 다 압수됐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다 압수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 압수 못 했어요? 아무튼 걸렸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유통 과정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유통 과정에서 검거가 됐어요. 국내에 잠입해 들어와서 이것이 유통이 되면서 검거할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국경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별도의 통로로 안내 돼서, 그건 말레이시아 조직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상한 사건이잖아요, 형기과장?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양, 규모, 밀반출, 밀반입한 그 경위, 사후적으로 유통하다 걸린 이런 특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검찰이 이것을 소 닦보듯이 하는 거예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경찰이 그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등을 비롯한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번 청구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게 어디를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입니까?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세관 사무실, 세관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총 몇 건 중에, 아까 5건 정도만 기각이 됐고 나머지는 다 발부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41건 정도가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기각한 것은 5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남부지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남부지검에 신청한 사건이구먼요. 그러면 남부지검도 사안을 아는 거고 영등포경찰서는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영등포서에서도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백해룡 경정이 유통되는 마약을 적발했을 때 영등포경찰서장 이름 알아요, 차관님? 김찬수 총경이에요. 이 사람 어디 근무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아마 행정관으로 간 것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용산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팩트예요.

또 하나, 형기과장,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 이첩받으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영등포경찰서의 주무관인 백해룡 경정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치를 하다가 이걸 잡았는데 그 사람은 좌천시켜 놓고 서울청에서 이첩하라, 서울청장이 누구인 줄 알아요? 이번 12·3 비상계엄의 김봉식이에요, 김봉식. 희한하지 않습니까? 용산도 등장하고 12·3 비상계엄의 주범도 등장하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양심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검찰이 이걸 관심을…… 그냥 영장으로 우리가 사법 통제한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사건을 소 닦 보듯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수사 진행의 경과에 따라서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세관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일단 하고 있고 세관 공무원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건한 상태에서 지금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검찰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대학을 다니는 우리 아들 녀석이 맨날 명태군만 얘기하고 맨날 계엄만 얘기하고 왜 이 마약 사건을 얘기 안 하느냐고, 20·30대의 굉장한 관심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마침 우리가 이 특검 심사를 오늘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형기과장, 차관님께, 대행께 보고해서 영장 청구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부된 건 어떤 내용으로 발부됐고 기각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기각됐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인천세관에서 뚫린 것 아닙니까. 뚫린 게 아니라 인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마약조직책을.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세관 관계자들을 다 형사 입건하고 기소했습니다? 자세히 몰라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입건은 영등포서에서 했는데 아직 기소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 입건 내역 아는 범위까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차관님, 아

시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차관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검찰이 2023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을, 피의자 1명을 구속한 것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미 이런 조직을 다 확보했어요, 진술도 확보하고 또 수첩도 확보를 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이 마약만 전문적으로 수사하잖아요,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말레이시아 조직책 전모를 몰랐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2023년 2월 27일 날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불려 나가 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을 설명했고, 이분들 중에 몇 분이 말레이시아 마약을 밀수입했다 이렇게 자백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관이 특검법을 반대할 게 아니고요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서 부끄럽다,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피의자조차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의심스럽다 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에요. 피의자가 그렇게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023년도 2월 달 3명을 수사한 것은 맞는데, 그때 그중에 1명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마약이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다른 공모자와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까 수사팀에서는 여죄를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정도 수사면요, 이 정도 첨보면 진즉 백해룡 경정보다 더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걸 안 해 놓고…… 차관님께서 이 수사팀 감찰해야 돼요. 감찰해 가지고 왜 수사가 지금까지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단서를 확보해 놓고 안 했는지를 밝혀야지요. 마약사건은 의외로 과 들어가 보면 내막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 못 밟히니까 특검으로 하자는 것인데,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수사팀에서 이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특검법 반대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 해서라도 검찰 직원들, 혹시 직원이 마약 수사 잘못한 것 있으면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때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두 가지, 영장 관계 그리고 입건 관계 그걸 정리해서 공문으로, 우리 위원회……

다 찬성하시지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받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 이상……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질문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과장님 이세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서영교 위원** 무슨 과장님 이세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형사기획과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형사기획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 저희 검찰에 접수돼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고 있지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든 뭘 하든 검찰은 이런 대규모 마약 사건이면 수사해야 되는 거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물론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성·예외성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려고 왔으면 기본은 공부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질문 할게요.

74kg을 어떻게 하면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74kg이 국내 유통되는 조작이 되는데, 74kg 정도면 어떻게 들고 옵니까, 보통?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밀수 방법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kg 정도라면 몸에 소지해 들고 들어오기에는 좀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몸에 소지하고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에 소지하고 들고 들어왔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그게……

○**서영교 위원** 안 하고 보충성·예외성 얘기를 해요? 보충성은 뭐예요? 보충성이 뭐예요? 보충성에 위배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보충성은 주된 수단이 적절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서영교 위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특검으로 수사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김태형** 예.

○**서영교 위원**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수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차관? 이 사람들 이 어떻게 해서 74kg 갖고 들어왔어요?

법무부가 모르고…… 마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맞았겠어요,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당에 있는 관계자들, 아들딸 다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 그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

○**서영교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것 갖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본범이 되는 밀수 그 사범 외에 비호하고자 했던 세관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서영교 위원 세관공무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세관공무원만 있어요, 여기에? 김찬수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세관공무원과 거기에 대한 외압 의혹이 덧붙여져 있는 사건이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당시 인천지검장은 누구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2023년도 2월이면, 아마 총장님이 인천검사장을 하셨는데 시기가 그때였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때잖아요.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왔어요?

인천세관의 지검장은 누구였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다 이것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

○서영교 위원 보세요. 기본은 알고 와야 그다음 핵심이 뭘지 알 것 아니에요.

보세요.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어요. 검색대 통과해요, 못 해요? 걸리지요? 그런데 칭칭 감고 들어왔어요. 몸에만 감고 들어왔어요? 74kg 갖고 오려면 어떻게 갖고 들어왔어요? 도마에 넣어 갖고 들어와요.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도마에 마약을 넣어서 도마를 물품으로 운반해서 들어와요. 그것 전부 다 검색대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천세관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 김해공항으로도 들어와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서 유통이 돼 버렸어요. 마약사범이 그냥, 운반책이 그냥 오겠어요?

대한민국이 왜 마약 수사해요? 여기에 권력자가 껴 있는지, 검찰이 껴 있는지, 경찰이 껴 있는지, 조폭이 껴 있는지, 일반인이 있는지 다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약청정국 아니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 마약은 김해로도 들어오고 몸에 칭칭 감아서도 들어오고 도마에 껴서도 들어오고 물품으로도 들어오고. 이 조직이에요, 이 조직. 그리고 들어오려고 100kg이 아직 말레이시아 공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관 저 세관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충성 얘기하면서. 이보세요, 차관. 보충성 얘기하면서 이게 언제 어떤 세관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기만이 아니라 어떤 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세관 직원만 있어요? 보세요. 세관 직원만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관 직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보세요? 이건 하지 않을 일들을 여러분이 다 수사해야 돼요. 법무부차관의 지위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우리 아기들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마약사범에서 유식한 척하고 무슨 보충성·예외성을 얘기하냐고요. 수사가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너무 화가 나요. 대한민국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구속을 취

소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헌이라고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된 게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자료는 찾 아봤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찾아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몇 번 나왔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 일고여덟 건 있는데 전부 다 신병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석방이 된……

○**서영교 위원** 그따위 얘기 하지 말고.

즉시항고 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했고, 열두 번이라고 지금 보도 나온 건 그래요.

그런데 법원이 이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 적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전에 즉시항고가 위헌이 있다라고 한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위헌 제청을 한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것은 당해 재판부에서 직접 제청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에서 제청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번에 12건 즉시항고 할 때 법원에서 제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사건은……

○**서영교 위원** 들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신병이 불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석방을 지휘한 다음에 항고했거든요.

○**서영교 위원** 아니,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며!

○**소위원장 박범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그 정도 하세요. 차관님도 가만……

○**서영교 위원** 자꾸 변명을 해 대고,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기과장, 열심히 해요, 고생하는 것 잘 아니까.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균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주진우 박범계 박희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